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58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8. 25. 김원순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09. 0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9. 13.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정이유

고성군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고성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토종농산물, 농업, 농업인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결정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30호
- 예고기간: 2023. 8. 29.(화) ~ 2023. 9. 4.(월) [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종농산물 육성·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그 목적 또한 부합한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토종농산물, 농업, 농업인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 제4조) 군수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 제6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결정은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고성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 등 철저한 업무추진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9. 13. 원안가결 함.